

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발의일자 : 2021. 10. 6.
- 발 의 자 : 조 영 순 의원 외 3명
- 회부일자 : 2021. 10. 6.
- 상정 및 의결 :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1. 10. 15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조영순 의원)

가. 관계법령

-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
-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 2

나. 제안이유

-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(안 제1조 ~ 제5조)
- 기부식품등의 제공에 관한 원칙(안 제6조)
- 기부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보조금 지원 및 지도·감독 근거(안 제8조, 제9조)
-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교육·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채은실)

- 본 조례안은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,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과 보조금 지원 및 지도·감독, 포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- 향후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증진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